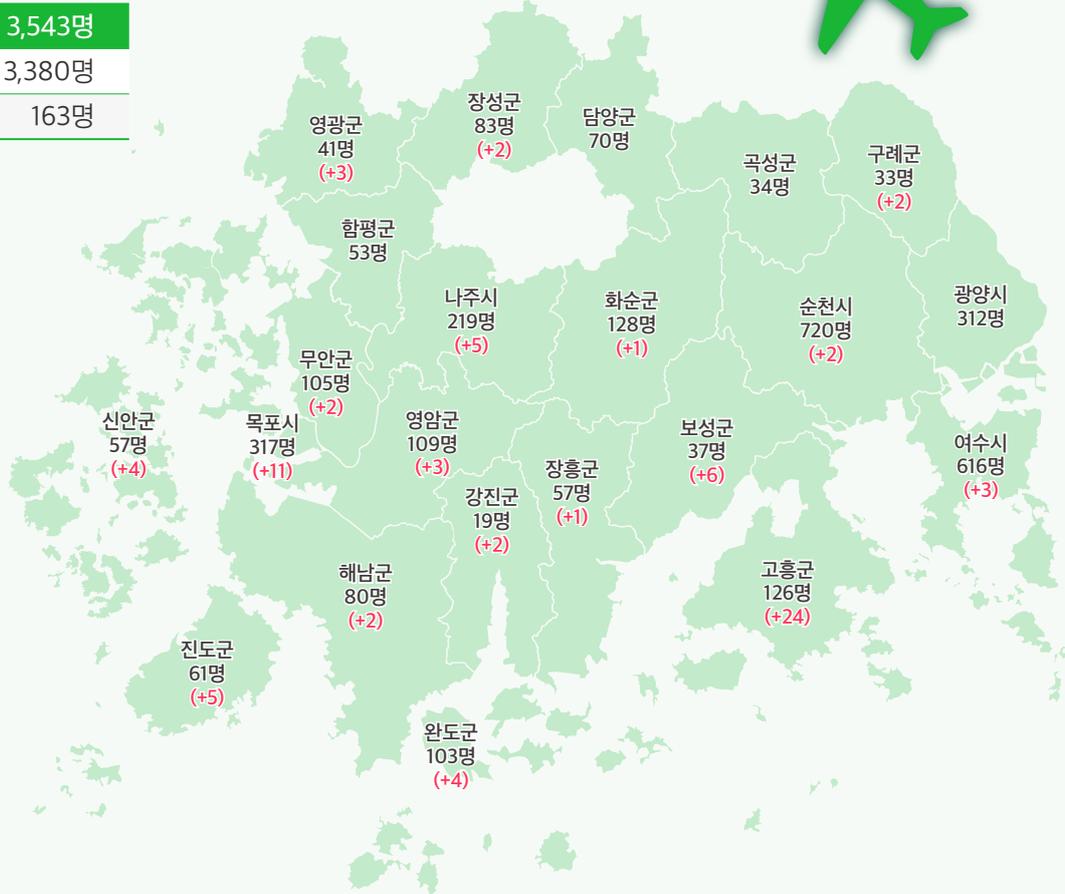


· (전라남도 코로나19 확진자 시군별 현황, 2021.10.24.~ 10.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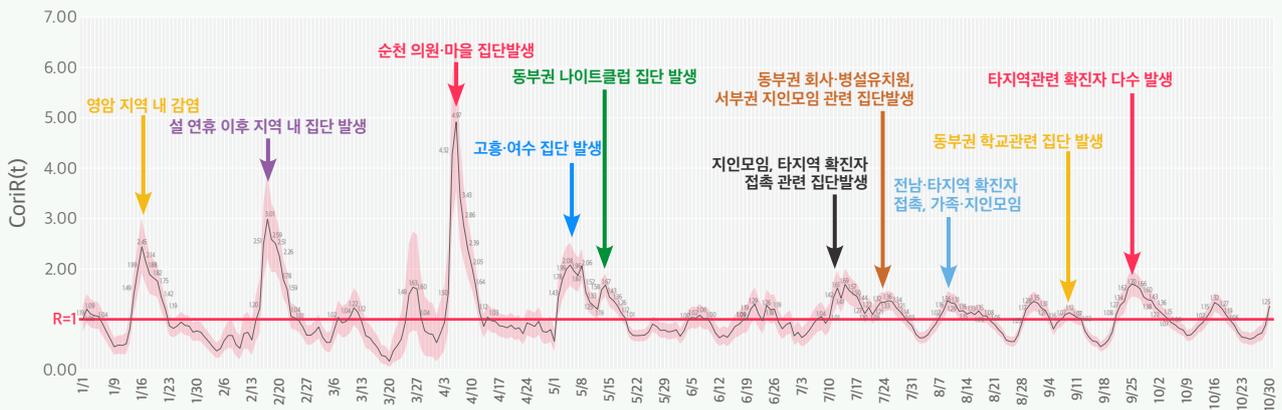


해외유입 163명 (+2)

총 발생	3,543명
지역발생	3,380명
해외유입	163명



· (전라남도 코로나19 실시간 감염재생산수(R_t))



- 2021. 1. 1. ~ 2021. 10.30. 실시간 감염재생산수(R_t)

: 2021년 43주차에는 동부권 마을 내 작업장 및 복지시설 관련 집단 발생, 타지역 및 전남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발생이 있었으며 집단발생으로 실시간 감염재생산수가 10월 30일 ($R_t=1.25$) 1 이상으로 상승함

- 감염재생산수(Reproduction number, R_0)

: 한 사람의 감염자가 감염 가능 기간동안 직접 감염 시키는 평균 인원 수
($R_0 < 1$: 감염병의 감소, $R_0 = 1$: 지역사회에 일정 수의 감염자가 유지, $R_0 > 1$: 감염병의 유행)

- 실시간 감염재생산수(Time-varying reproduction number, R_t)

: 실시간으로 질병 전파 양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검역·격리 및 방역 정책의 효과 추정 가능

감염경로

· (전국)

- 최근 2주간 감염경로(21.10.18.~21.10.31.),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참고

합계 (명(%))	선행확진자 접촉	지역집단 발생	병원 및 요양시설 등	조사중	해외유입	해외유입 관련
22,310 (100)	11,421 (51.2)	3,261 (14.6)	1,041 (4.7)	6,309 (28.0)	274 (1.2)	4 (0.0)

· (전남, 누적)

합계 (명/%)	해외 유입	집단사례								개별 사례	미분류 (조사중)
		직장 관련	마을 관련	다중이용 시설	의료 기관	감염취약 시설	군부대 관련	모임관련 (가족포함)	종교 관련		
3,543 (+84)	163 (+2)	290 (+16)	116	786 (+3)	53	62 (+14)	39	317	98	1,174 (+36)	445 (+13)
100	4.7	7.9	3.4	22.6	1.5	1.4	1.1	9.2	2.8	33.0	12.5

II. 코로나19 해외유입 현황 (10월 31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참고)

해외유입 환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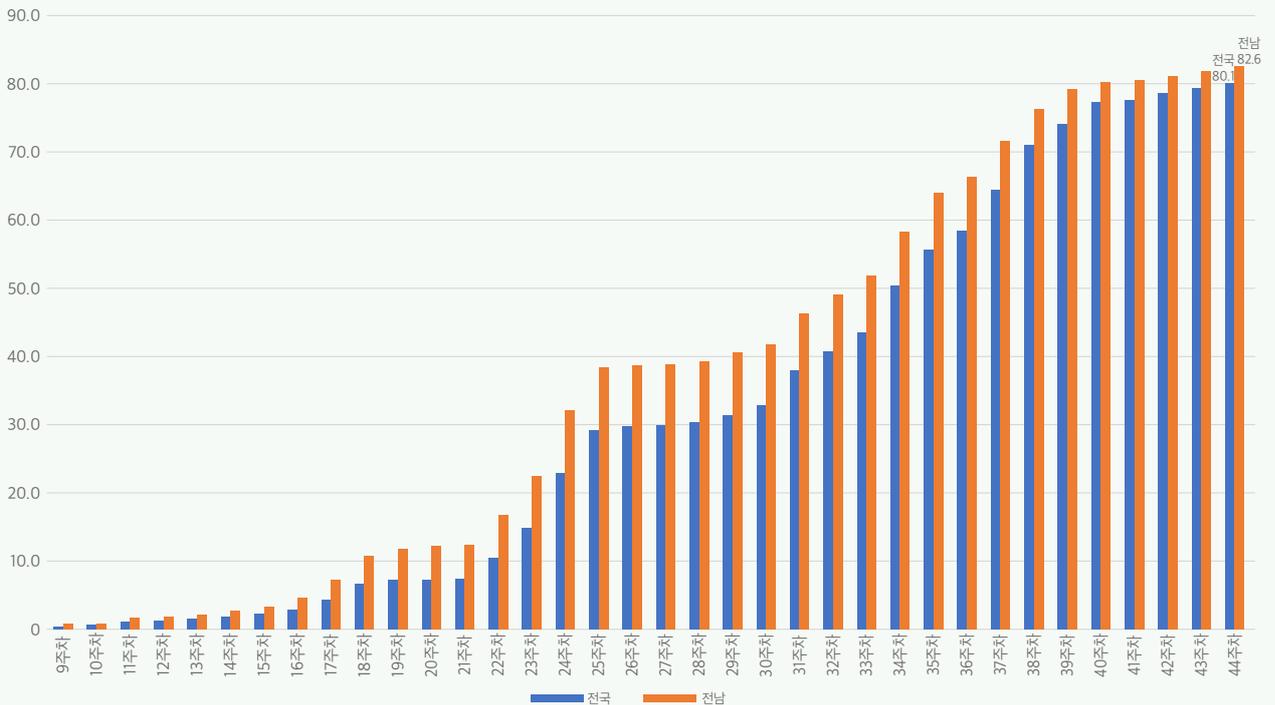
	구분	전주대비 신규(명)	누계(명)	비율(%)	
전국	합계	+133	15,093	100	
	유입국가	중국	+9	159	1.1
		아시아(중국 외)	+69	8,516	56.3
		유럽	+19	2,055	13.6
		아메리카	+28	3,301	21.9
		아프리카	+7	1,023	6.8
		오세아니아	+1	39	0.3
	국적	내국인	+51	7,577	50.2
		외국인	+82	7,516	49.8
전남	합계	+2	161	100.0	
	유입국가	중국	-	-	-
		아시아(중국 외)	-	90	55.2
		유럽	+1	28	17.2
		아메리카	-	17	10.4
		중동	-	22	13.5
		아프리카	+1	6	3.7
	국적	내국인	+2	97	59.5
		외국인	-	66	40.5

III. 코로나 19 예방접종 현황 (10월 31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참고)

구분	전국		전남	
	누계(명)	인구 ¹⁾ 대비 접종률(%)	누계(명)	인구 ²⁾ 대비 접종률(%)
1차 접종자	41,135,997	80.1	1,519,888	82.6
접종완료자	38,660,478	75.3	1,443,219	78.5

1)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지) 기준
 2) 전남 도민(184만 명) 기준

■ 코로나19 1차 접종 인구대비 접종률(전국, 전남)



■ 이상반응 신고현황

- (전국) 이상반응 신고현황: 351,913명*(접종자수 79,796,475명** 대비 0.44%)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259건, 화이자 163,434건, 얀센 8,538건, 모더나 73,682건
 - (전남) 이상반응 신고현황: 12,380명*(접종자수 2,965,235명** 대비 0.42%)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773건, 화이자 4,495건, 얀센 285건, 모더나 3,827건
- **1차 접종자 + 2차 접종자(완료자)

■ 전남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단위: (명, %)

등록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대상자(A)	1차(B)	접종률 (B/A*100)	완료(C)	접종률 (C/A*100)	1차	완료
31,998	28,928	90.4	23,419	73.2	23,532	21,999

■ 전남 시군별 접종실적

단위: (명, %)

시군명	전남도 인구수(A) ¹⁾	접종 현황 ²⁾			
		1차(B)	접종률 (B/A*100)	완료(C)	접종률 (C/A*100)
계	1,839,432	1,519,584	82.6	1,438,413	78.2
목포시	222,392	173,195	77.9	161,775	72.7
여수시	278,605	226,402	81.3	212,263	76.2
순천시	280,931	222,160	79.1	209,815	74.7
나주시	114,856	95,710	83.3	90,077	78.4
광양시	151,174	118,981	78.7	112,315	74.3
담양군	45,911	39,923	87.0	38,286	83.4
곡성군	27,847	23,962	86.0	23,078	82.9
구례군	25,568	21,240	83.1	20,411	79.8
고흥군	63,534	55,296	87.0	53,161	83.7
보성군	40,076	34,550	86.2	33,281	83.0
화순군	62,085	52,672	84.8	50,124	80.7
장흥군	37,480	31,481	84.0	30,163	80.5
강진군	34,305	29,174	85.0	28,029	81.7
해남군	68,243	60,452	88.6	57,603	84.4
영암군	53,206	50,421	94.8	47,651	89.6
무안군	85,699	71,499	83.4	67,474	78.7
함평군	31,695	27,750	87.6	26,698	84.2
영광군	52,599	43,505	82.7	41,376	78.7
장성군	44,079	37,620	85.3	35,971	81.6
완도군	49,630	43,228	87.1	41,246	83.1
진도군	30,978	26,518	85.6	25,299	81.7
신안군	38,539	33,845	87.8	32,317	83.9

1) '21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2) 등록·미등록 외국인 포함

IV. 코로나19 관련 주간 정책동향

보건복지부

·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의 새로운 시작, 2주간 방역점검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주간 별도 점검단을 통해 방역 점검
- (내용)
 -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중심으로 감염이 취약할 수 있는 유흥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식당·카페, 학교·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실행 할 계획
 - 위반행위 적발이나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상회복 전환 이후 변경된 방역수칙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과 계도에 주요 목적

·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 내년 교육 정상화

- 3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능 이후 전면 등교, 초중고 소규모 체험활동 부활
- 계절학기 중 대면수업 시범운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학내시설에 권고
- (내용)
 - 기존 1~4단계 거리두기 구분 폐지,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 변경
 - 올해 겨울 계절학기부터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해 대면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내시설 이용 등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이용 가능 범위 확대

전라남도

· 고위험군 돌파감염 증가, 예방대책 강화

- 고위험군 추가 접종 확대, 방역수칙 준수·시설 지도점검
- (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에 대비해 돌파감염 차단을 위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고위험군 등에 대한 추가 접종 확대 예정
 - 접종완료자라도 마스크 착용 생활화,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위험지역 방문 후 적극적 진단 검사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권고,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도·점검을 적극 벌일 방침

· 노인보호센터 이용자·종사자 진단검사 의무화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 (내용)
 - 최근 고흥군 주간보호센터에서 밀폐된 환경과 미흡한 환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용자 등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내 종사자·이용자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2주 1회 의무적으로 PCR검사 의무화

V. 주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전라남도

- 수두 8건, 유행성이하선염 17건, CRE 13건, E형간염 1건, C형간염 11건, 레지오넬라증 1건, 발진열 1건, 찻뜨가무시증 73건, 렘토스피라증 6건, 큐열 1건, 라임병 4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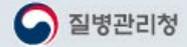
전라남도 신고현황

구분	주간현황(2021)						누적신고현황(44주)					지난해 신고현황		
	이번주	이전 4주				증감 ¹⁾	올해 2021	이전 3년			증감 ²⁾	2020년		
		44주	43주	42주	41주			40주	2020	2019		2018	전남	전국
1급	보툴리눔독소증	0	0	0	0	0	0	0	0	0		0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0	0	0	0	0	0	0		0	0	
2급	결핵	-	19	24	15	23	959	1,040	1,096	1,184	▼	1,049	19,933	
	수두	8	21	19	21	19	▼	937	1,098	2,359	2,642	▼	1,253	31,430
	홍역	0	0	0	0	0		0	1	11	1	▼	1	6
	콜레라	0	0	0	0	0		0	0	0	0		0	-
	장티푸스	0	0	0	0	1	▼	5	0	2	4	▲	0	39
	파라티푸스	0	0	0	0	0		2	5	0	3	▼	5	58
	세균성이질	0	0	0	0	0		5	2	6	5	▲	2	2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	0	0	0	0		14	12	11	6	▲	12	270
	A형간염	0	5	6	0	2	▼	100	54	150	28	▲	66	3,989
	백일해	0	0	0	0	0		0	20	29	24	▼	21	123
	유행성이하선염	17	40	22	12	15	▼	434	345	536	648	▼	404	9,922
	풍진	0	0	0	0	0		0	0	1	0	▼	0	2
	수막구균감염증	0	0	0	0	0		0	0	0	0		0	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0	0	0	0	0		0	1	0	0	▼	1	1
	폐렴구균 감염증	0	0	0	0	0		5	10	10	16	▼	11	345
	한센병	0	0	0	0	0		0	1	0	0	▼	1	3
	성홍열	0	0	2	0	2	▼	42	95	207	562	▼	100	2,300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0	0	0	0	0		0	0	0	0		0	9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중(CRE)감염증	13	11	8	8	7	▲	334	301	296	122	▲	363	18,113
	E형간염	1	0	2	0	0	▼	21	3	0	0	▲	6	191
3급	파상풍	0	0	0	0	0		0	2	2	5	▼	2	30
	B형간염	0	0	0	0	0		11	15	15	15	▼	17	382
	일본뇌염	0	0	0	0	0		0	0	2	1	▼	0	7
	C형간염	11	17	15	11	9	▼	595	756	590	771	▼	881	11,849
	말라리아	0	0	0	0	0		3	1	0	6	▲	1	385
	레지오넬라증	1	2	1	0	1	▼	29	13	14	5	▲	12	368
	비브리오패혈증	0	0	1	0	2	▼	8	10	6	4	▲	11	70
	발진열	1	0	1	0	0		2	0	1	2	▲	0	1
	쯔쯔가무시증	73	75	71	16	6	▼	418	275	312	644	▲	812	4,479
	렙토스피라증	6	3	4	1	0	▲	19	10	11	9	▲	13	114
	브루셀라증	0	0	0	0	0		1	2	0	0	▲	3	8
	신증후군출혈열	0	2	1	1	0	▼	26	31	53	42	▼	49	270
	크로이츠펠트-야콥병	0	0	0	0	0		3	1	2	0	▲	1	64
	덴기열	0	0	0	0	0		0	1	1	3	▼	1	43
	큐열	1	0	0	0	0	▲	2	13	20	18	▼	13	69
	라임병	4	0	0	0	0	▲	4	0	2	0	▲	0	18
	유비저	0	0	0	0	0		0	0	0	0		0	1
	치쿤구니야열	0	0	0	0	0		0	0	1	0	▼	0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5	0	0	0	0	▲	13	8	16	16	▼	8	24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0	0	0	0	0		0	0	1	0	▼	0	1

1) 이전 4주 신고건수 중 최대값 대비, 2) 이전 3년 평균 신고건수 대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됨
- 의료기관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함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 (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감염병 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 될 수 있음
- 44주(2021.10.24.~10.30.) 감염병 신고현황은 2021.11.3.(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2021년 통계자료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임
- 최근 5년간 발생이 없었던 감염병은 제외함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
- 결핵은 43주(2021.10.17.~10.23.) 신환자 신고 현황을 수록한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질병 및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를 참고함

2021.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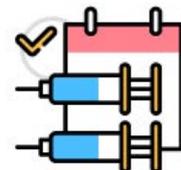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추가접종 종합 안내



접종대상	접종간격	접종백신	접종일정
면역저하자 <small>* 급성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형성이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small>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	mRNA 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전예약 10.18.(월) 20시~ 접종시기 11.1.(월)~
안센백신 접종자		mRNA 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small>*본인 희망시 안센 접종가능(30세 이상)</small>	사전예약 10.28.(목) 20시~ 접종시기 11.8.(월)~
50대 연령층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small>*6-8개월 사이 권고</small>	mRNA 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전예약 11.1.(월) 20시~ 접종시기 11.15.(월)~
기저질환자 <small>*내분비 장애,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소화가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 및 의사 판단 하에 추가접종이 권고되는 사람</small>			
우선접종 직업군			
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돌봄 종사자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사회필수인력 (경찰, 소방, 군인 등)			

* mRNA 백신 금기·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하에 피접종자에게 적합한 백신으로 접종 가능(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추가접종 실시하는 경우 30세 이상만 가능)

- ✔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잔여백신도 가능
* 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 추가접종은 11.1일~, SNS 당일 신속예약을 통한 추가접종은 11월 중순 경 예정(잠정)
- ✔ **사전안내** 추가접종 가능일 기준 3주전부터 개별문자 등을 통해
 접종대상 여부 및 방법 안내
* 단, 별도 명단이 없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사전안내 없이 본인이 직접 예약
- ✔ **사전예약** 추가접종 가능일 기준 2주전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예약 가능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

인·허가, 인사(채용승진 등), 계약, 보조금, 학사업무(입학, 성적 등), 병역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 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법

“부정청탁 관련 법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제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공직자 등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